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교 육 공 무 원 징 계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반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, 징계의결 요구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 등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·보완하고자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고, 이 중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(안 제4조제4항 일부 개정)
- 나.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(안 제9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 신설, 별지 제2호 및 제6호 서식 일부 개정)
- 다. 징계부가금 감면·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(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기간 : 2021. 12. 28.~2022. 2. 7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”를 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교원위원이 아닌 사람”을 “교원위원이 아닌 사람(학부모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제1항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정년,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(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외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구성)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 위자가 되고,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·교육연구 관·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 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다음 각 호(대학의 경우 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, 시· 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·군·구 교 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<u>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u> 다 만, 시·군·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 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1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	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호에</u> <u>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

교원위원이 아닌 사람

2. ~ 5. (생략)

제9조의3(우선심사)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<후단 신설>

② · ③ (생략)

교원위원이 아닌 사람(학부모위원
최소 1명 이상 포함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우선심사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 경우. 다만 징계의결 등
요구권자는 징계등 협의자의
정년,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
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
경우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
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확인서

1.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		
	(현재) (협의 당시)	(현재) (협의 당시)	(한글) (한자)			
2. 비위유형	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다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라.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마. 성폭력·성희롱 등 성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바.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사.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아. 신규채용, 특별채용, 전직, 승진,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자.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차.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카.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타. 「공직선거법」상 관련 비위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파.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하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 제외)		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
	3. 징계부가금	대상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, 대상금액(원, 배)				
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						
4.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 위 해당 여부	공적 사항		징계 사항[불문(경고) 포함]			
	포상일	포상 종류	시행청	날짜	종류	발령청
	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
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(□해당함, □해당 없음)						
5. 혐의자의 평소 행실	* 징계 횟수, 주의·경고 횟수, 직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
6. 그 밖의 사항	퇴직 예정일					
	정년: . . . 근무기간 만료: . . . 기타(): . . .					
*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						

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

(직급)

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
요구(신청)권자(직위)

직인

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

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성명
의결주문	징계 종류,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		
이유	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,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, 징계부가금 조정(감면) 사유 등을 기재		

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년 월 일

징계위원회

청인

■ 교육공무원 징계령 [별지 제6호서식]

징 계 또 는 징 계 부 가 금 처 리 대 장

번호	인 적 사 항 및 결 과								처 리 경 위						징계 의결 번호	비고
	소 속 (신 청 기 관)	직급	성명	현 소속 직위	퇴직 예정일	혐의 내 용	요구자 의견	결과 (의결)	요구서 접수일	사실조사 기간	징계위원회 개최	의결일	의결서 통보일	특기 사항		
				혐의 당시 소속 직위						조 사 자						
					정년: 근무기간 만료: 기타():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									...		제 회	...	...			

42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6